

2018 종교인 소득과세 준비자료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추천의 말

종교인 소득과세에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과 전국광역시도와 한국교회법학회가 공동 대처하였습니다. 소득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에 즈음하여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혼란을 겪고 있던 차에, 법과 세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한국교회법학회가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한 기독교 지침서인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발간하게 된 것은 시의 적절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종교인소득 과세라는 미지의 바다에서 파고를 헤치고 순항할 수 있는 항해지도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어느 해보다도 긴장됩니다. 목회자들도 종교인의 범주에서 종교인 소득 납세자가 되는 2018년 새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이 새롭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잘 준비해야겠는데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시한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기독교 특성을 고려하여 (사)한국교회법학회에서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어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정부수립 후 처음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과세이기에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요청대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하였다면 혼란과 충격을 줄일 수 있었겠지만 정부 강행 방침과 여론에 떠밀려 제대로 준비도 안된 가운데 시행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종교인 소득과세 안내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였지만 전문적 지식 없이 이해가 어려운데 한국교회법학회가 보다 쉽고 기독교 특성을 고려한 지침서를 출간하게 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 책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2018년 1월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되면서 1월 중순 정부(국세청)가 제시한 과세 안내매뉴얼은 우리 기독교의 특수성과 교회와 목회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회법학회가 기독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연구 편찬하여 한국교회 앞에 내놓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생소한 납세 문제를 알기 쉽게 질의응답(Q&A)을 추가한 부분은 많은 노력이 뒤따른 결과입니다. 전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책을 종교인 소득과세 기독교 지침서로 잘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한국기독교연합 직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 책을 편찬한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교수님과 이석규 세무사님은 본교단이 2017년 연말 목회자 납세대책위원회와 기독교신문이 공동주최한 ‘전국권역별 종교인 소득과세 보고회’에서 강사로 활동해주신 분들이십니다. 책을 준비하는 동안 지역 교회로부터 종교인 소득과세 관련 문의 전화와 이메일에 친절히 답변을 해주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출간하는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이 전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안내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종교인 과세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국교회법학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전계현** 목사

한국교회법학회에서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출간하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교단은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님을 초청하여 ‘한국교회 분쟁 예방과 교회사건 재판에 대한 교리적, 법리적 연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인연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과세는 저희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번 출간하는 책이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교회를 바르게 안내하는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

현행 종교인 소득과세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소 포함되어 있어 한국교회는 이를 우려하고 있고 공동대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과세는 반길 수만 없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한국교회법학회가 ‘종교인소득 과세 안내서’를 출간하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그 귀한 수고에 감사드리며 한국교회를 지키는 방패와 파수꾼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신상범** 목사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이 한국교회법학회를 통해 발간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헌제 회장님과 모든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종교인 소득과세는 시행되었지만 현장인 총회와 교회와 목회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때에 한국교회법학회가 구체적인 지침서를 만들어 한국교회에 제공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장로교 총회장 **윤세관** 목사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종교인 소득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세금에 대한 경험과 준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혼란과 걱정이 큼니다. 작금에 한국교회법학회가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출간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입니다. 집필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증경총회장 **최승영** 목사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정서가 쓰나미처럼 한국교회로 덮쳐올 때 우리는 동성애와 차별 금지법 대처에 몰두하면서, 종교인과세가 한국교회 생태계를 이렇게 위협할 줄은 몰랐습니다. 종교인과세는 손자병법에서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 교란시켜 놓고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와 같이 한국교회에게 위협한 태풍이었습니다.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평등의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입법화과정에서 ‘종교소득과세’로 시도되었던 것을 ‘종교인소득과세’로 바로잡았고, 시행을 앞두고도 수많은 난제가 있었지만 한국교회법학회가 전문적 대응에 힘을 보태 치명적인 위기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한국교회법학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출간해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월부터 출범하는 정부와 종교간 “종교인 소득과세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상임고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목회자납세대책위원장 **소강석** 목사

한국교회법학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법을 통해 교회분쟁을 예방 조정하고, 교회사건 재판에 대한 교리적 기준 제시로 교회의 공공성 신뢰성 회복을 목적으로 2013.4. 창립하여, 법무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창립 후 20여 회 학술세미나를 실시하였고, 학회지와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등 다수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교회분쟁콜센터 운영과 미디어를 통한 선교활동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교회 종교인소득 과세 공동TF”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새해들어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 저희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 **전주남** 목사

본서는 2015.12.2. 개정 소득세법과 2017.12.16.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교인과세 관련 규정 및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납세 준비를 위한 안내 내용 책자입니다. 본서의 저작권은 (사)한국교회법학회에 있으며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나 기타 연락은 (사)한국교회법학회(www.church-law.co.kr, ☎1600-9830)로 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말

국회는 2015.12.2. 종교인소득 과세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2017.12.26. 시행령 개정안과 재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종교인소득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교인과세는 지난 50년 동안이나 종교계, 정부,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고 법제정 이후에도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세당국과 종교계가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불과 4개월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인과세 공동 TF’를 구성하여 종교인과세로 인해 초래될 종교자유 침해와 정교분리원칙의 훼손 우려가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당초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한국교회 연합기관들과 주요 교단들의 단합된 힘과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이제 공은 교계로 넘어 왔습니다.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당장 2018년 1월부터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개인종합소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9년 5월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종교인과세라는 충격을 딛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평과세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는 2017년 9월부터 '종교인과세 공동 TF'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논의되고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교인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통해 한국 교회를 섬긴다'는 학회의 방침에 따라 이 매뉴얼(PDF)은 필요한 교회와 목회자이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책은 매뉴얼(PDF)을 수정·보완하고 여기에 종교인과세 질의응답(Q&A)과 참고자료를 덧붙인 것입니다.

이 책은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에서는 종교인소득과세의 주요내용을 종교인소득의 유형과 개념, 소득신고납부절차, 세무조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순으로 설명하였는데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8년종교인소득신고 안내』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II.에서는 종교인소득과세를 위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준비 사항을 과세대상자의 범위, 과세대상 소득 결정, 소득신고와 납부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 교회정관과 재정·회계의 정비 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III.에서는 종교인소득과세의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담긴 질의응답은 학회의 종교인과세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과 목회자나 교회관계자들이 전화 또는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종교인들에게 생소하고 친숙하지 않는

세금이라는 문제를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질의응답(Q&A)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IV.에서는 종교인소득과세를 이해하기 위한 참조자료로서 국민일보에 2017년 10월부터 10회 연재로 게재한 TF전문위원들의 기고문과 종교인소득과세 정보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를 소개하였습니다. V.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대비표,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모범정관, 종교인과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각종 대비표 및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서식을 담았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하고 후원해주신 종교인과세 공동 TF위원장 권태진 목사님과 TF위원님들, 종교인과세대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님, 교회연합기관, 교단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무와 법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한 이석규 세무사와 정재곤 박사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신뢰할 만한 종교인과세 지침서가 마련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로 하여금 법에서 정한대로 세금을 내어서, 세금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 1. 20.

편집대표 학회장 서헌제

[목 차]

추천의 말	II
머리말	VII

I. 종교인소득과세의 내용

1. 종교인소득 과세의 개요	1
1-1. 개관 / 1	1-2. 종교인소득 과세의 특징 / 2
2. 종교인소득 구분	5
2-1. 과세대상 소득 / 5	2-2. 비과세소득 / 11
2-3. 필요경비 / 15	2-4. 징수세율 / 15
2-5. 신고소득 선택 / 16	
3. 소득신고 및 납세	19
3-1. 원천징수 / 21	3-2. 연말정산 / 24
3-3.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25	3-4. 지급명세서 제출 / 27
4. 세무조사	28
4-1. 질문조사의 대상 / 29	4-2. 종교활동비 / 29
4-3. 수정신고 / 30	
5.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30
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30
6-1. 근로장려세제 / 31	6-2. 자녀장려세제 / 33
7. 종교인소득 과세의 현실	34
7-1. 세수 예상 / 34	7-2. 면세점의 기준 / 35

II. 종교인소득과세를 위한 준비

1. 과세대상자 범위	37
1-1. 담임목사 / 38	1-2. 부목사 / 38

1-3. 전도사 / 39	
2. 신고소득(과세대상소득)의 범위	41
2-1. 소속 교회에서 받는 소득 / 41	
2-2. 소속교회 이외의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 44	
2-3. 종교단체 이외로부터 받는 소득 / 45	
2-4. 기부금 세액공제 / 45	
2-5.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 48	
3. 소득신고와 납부 :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52
3-1. 교회 소속 목회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 52	
3-2.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강사로 등에 대한 원천징수 / 55	
4. 교회정관과 재정·회계의 정비	55
4-1. 고유번호증 부여 / 55	
4-2. 구분기장·관리 / 57	
4-3. 교회정관과 재정규칙의 정비 / 59	
4-4. 교회재정과 회계정비 / 59	

III. 종교인소득과세 질의응답(Q&A)

1. 종교인 과세의 근거	63
2. 과세 대상 종교인	66
3. 종교단체	71
4. 종교인소득 : 과세대상소득	75
5. 비과세소득	81
5-1. 학자금 / 82	5-2. 식사비(식대) / 84
5-3. 실비변상적 지급액 / 85	5-4. 출산보육비 / 87
5-5. 사택제공이익 / 88	5-6.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 91

6. 종교인소득/근로소득 신고 선택	97
7. 원천징수/종합소득세신고	102
8. 연말정산/지급명세서	109
9. 세무조사	120
10. 종교인소득과세를 위한 준비사항	123

IV. 종교인소득과세 참고자료

1. 국민일보 기고	125
1-1. “종교인 과세, 왜 유예를 이야기하나”	126
1-2. “누가 누구로부터 받은 어떤 대가에 과세할 것인가”	128
1-3. “종교인소득 세부 과세기준안 왜 문제인가”	130
1-4. “종교인 과세, 정부-종교계 간 ‘협의과세제도’ 필요하다”	132
1-5.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항목 축소하려면”	134
1-6. “종교인 세무조사, 위헌 아닌가요”	136
1-7. “정치·종교 공존하려면 완충지대 필요하다”	138
1-8. “종교활동과 영수증”	140
1-9. “종교활동비가 과연 종교인의 짬뽕돈인가”	142
1-10. “50년 만에 법적 조치 마무리... 종교인과세 시행만 남았다”	144
2.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판결	146
2-1. 사안의 개요	146
2-2. 서울행정법원 판결(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147
2-3.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누26816) / 151	
2-4. 대법원 판결(2013두4309) / 152	
2-5. 판결의 의미 / 153	

V. 부록

부록 1.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158
부록 2. 종교인소득/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67
부록 3. 교회의 모범정관 및 재정운용규칙	170
부록 4.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대비표	173
<표 1> 종교인관련 소득세 일람표 / 4, 173	
<표 2> 종교인 직책별 과세표 / 7, 174	
<표 3> 종교인소득/근로소득 대비표 / 16, 175	
<표 4> 소득수준별 종교인소득/근로소득 세액비교 / 17, 176	
<표 5> 종교인소득신고/근로소득신고 대비표 / 18, 177	
<표 6> 과세 대상 종교인 범위 / 40, 178	
<표 7> 종교인의 과세소득/비과세소득 대비표 / 46, 178	
<표 8>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의 구분 / 48, 180	
<표 9> 세무 신고 · 납부 시기 및 서류 일람표 / 53, 181	
<표 10> 종교인과세 대비 교회/목회자의 준비사항 일람표 / 61, 182	
부록 5. 종교인소득과세 관련서식	183
[서식 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 184	
[서식 ②]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185	
[서식 ③]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 186	
[서식 ④]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 연말정산용) / 187	
[서식 ⑤]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 189	
[서식 ⑥]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 190	
[서식 ⑦]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191	
[서식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93	
[서식 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 / 196	
[서식 ⑩]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 198	